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9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 임종성ㆍ이원욱ㆍ오영환

김진표・윤관석・홍성국

송옥주 · 소병훈 · 김종민

김영호ㆍ기동민ㆍ박 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하면서 자동 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에 그치고 있어 무상수리 대상의 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차량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여 무상수리 정보의 수취율을 높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항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 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 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 4 |
|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 | |
|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
|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 | |
| 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 | |
| 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 | |
| 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따라 <u>우편발송</u> 등의 방법으로 |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 |
|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 | 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 다. | |